

중대재해 사례

소화배관 용접부위에 광명단을 칠하던 중 떨어져 사망

< 사고개요 >

2019.00.00.,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문화센터신축 소방공사 현장 지하1층 기계실에서 소화배관(Ø100mm) 용접부위에 광명단을 칠하던 중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



[사진] 재해상황도

① 사고발생원인

○ 작업발판 미설치

- 사업주는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미설치 한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짐

○ 안전대의 부착설비 미설치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5.5m 이상의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

○ 안전대 미지급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5.5m 이상의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미지급하여 추락시 보호받지 못함

② 동종사고 예방대책

○ 작업발판 설치(추락의 방지)

- 사업주는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시(5.5m)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.

※ 렌탈 장비 사용 또는, 비계 조립(이동식비계/틀비계 등) 등

○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5.5m 이상의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
- 또한,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

○ 안전대 지급(보호구의 지급 등)

-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5.5m 이상의 소방배관 설치 및 광명단 칠 작업 장소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, 안전대를 안전대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